
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

제 1 조 약관적용범위

-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 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2 조 이자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 (이하 '원가일' 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. 다만,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, 그 외의 예금의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- 1.보통예금: 매년 6 월, 12 월의 28 일
- 2.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: 매월 28 일

- ② 제①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 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비율로 셈한다. 다만, 기업자유예금의 이자자는 예금액마다 예금일부터 7 일이 경과한 예금에 한하여 예금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액을 뺀다.

- ③ 예금의 이자는 제 1 항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외하한 최 중거래일로부터 5 년까지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, 5 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 금에 더하지 않고,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 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 2-2 조 예금수수료

※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

- ①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(음의 값)인 통화 예 금의 경우, 은행은 예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동 수수료는 월평균 잔액이 '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' 이상인 경우, 월평균 잔액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. 동수수료율은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 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은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또는 변경 즉시 통지한다.

- ② 전항의 수수료는 달리 약정하지 않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에 원금에서 차감되며,

- ① 수수료 산정 기간은 당월 1 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 다. 단, 수수료 차감 전 인출요청 또는

계좌해지시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 합계액과 인출요청액의 합이 예 금잔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. 이는 법인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거래중지계좌

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처가 위계좌 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예금 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 년 이상 입출 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2.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미만이며, 2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3.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
제 4 조 은행제공 수표·어음용지에 의한 거래

-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·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
- ② 제①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. 다만,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제 5 조 거래제한

-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 인 1 계좌에 한한다.
- ② 거래처는 제 4 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 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않는다. 다만, 거래처가 은행 (다른 은행 포함)과 직접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.
- ③ 통장이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 법」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명 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6 조 수표·어음금 지급 및 지급 위탁 취소

- ① 은행은 제 4 조 제①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 위탁 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.
-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 에만 지급한다. 다만,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 에도 지급할 수 있다. 을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

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 하여야 한다.

제 7 조 지급특례

① 제 6 조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 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 제할 수 있다.

1. 각종 이자, 보증료, 수수료
2. 수입어음 원금, 수출어음 부도대전
3.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
4.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

제 8 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

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.

제 9 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

- ① 은행은 당좌예금, 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(대출한 도 포함)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수표, 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

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어음·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 의를 다하였어야 한다. 이는 법인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1.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,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
2.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·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 하였을 때 (다만, 32 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3.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5 조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 하였을 때
4. '지시금지'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 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

② 제①항 제 3 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 반에 해당하여 제 3 자에게 손해 배상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대리인과의 거래

-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 표·어음 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의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 공기록정보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 절할 수 있다.

제 12 조 당좌·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

- ① 은행은 거래처가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의 기준에 의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의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, 은행이 정한 당 좌·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 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.
- ②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 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13 조 당좌·가계당좌예금의 해지 후 처리

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 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 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당좌예금거래보증금

-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 (이하 '보증금'이라 한다)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.
- ② 은행이 제①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 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, 남으면 은행 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다.
-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①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한다.
- ④ 은행은 제③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·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. 다만,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 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 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다.

⑤ 제④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.

이 약관은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